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9-19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누657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[redacted]물류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5구합52818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4. 5.
판 결 선 고	2017. 4. 12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기재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9-19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(위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중 제1심 판결 별지2 기재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취소하였는데,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)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

○ 2면 14행의 "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29,234.99㎡의 창고시설"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6층 창고시설 연면적 29,207.85㎡(1층 8,892.82㎡, 2, 3층 각 733.59㎡, 4, 5층 각 9,216.8㎡, 6층 396.11㎡,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경비실 18.14㎡) 1동 】

○ 3면 2행의 "이 사건 물류창고"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【 이 사건 물류창고와 함께 2013. 4. 23.자로 원고의 소유로 등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층 18.14㎡ 창고시설(경비실) 1동 및 2014. 1. 15.자로 원고의 소유로 등록한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1층 9㎡ 창고시설(기타창고시설) 1동 연면적 합계 29,234.99㎡ 】

○ 3면 14행의 [인정근거]에 "을 제11호증"을 추가하고, "을12" 다음에 "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"를 추가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9-19

○ 5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, 5면 마지막 행의 "④"와 6면 2행의 "⑤"를 "⑤"와 "⑥"으로 차례로 고친다.

【 ④ 원고는 2013. 4. 30.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 중 7,164㎡에 대하여 특허기간 2013. 4. 30.부터 2018. 4. 29.까지, 설치 · 운영의 목적 '일반 수출입화물 장치'로 하여 관세법령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을 특허받아 이를 설치 · 운영하여 왔고, 임대부분과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창고로 운영하여 왔다.

○ 6면 5행의 "5)"를 "3)"으로 고친다.

○ 6면 7, 8행의 [인정근거]에 "갑 제13호증,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"를 추가한다.

○ 6면 10, 11행을 삭제하고, 12행의 "위 인정사실" 앞에 "(가)"를 추가한다.

○ 6면 13행의 "위 임차인들"을 "임차인들 중 주식회사 삼양사, 태평양씨앤씨 주식회사, 주식회사 체리쉬, 이엘센타 주식회사, 주식회사 티앤씨로지스"로 고친다.

○ 7면 4행부터 7면 5행의 "체결하였다"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【 ② 원고는 위 임차인들과 이 사건 물류창고의 일부 17,140㎡ 가운데 창고 부분의 면적과 그에 부수한 사무실 부분의 면적을 각 특정하여 일부씩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,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직접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· 운영하는 등으로 창고용으로 사용하였다. 】

○ 7면 15행의 "제한하였다."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【 제한하였고,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전대 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. 】

○ 8면 3행부터 9면 6행까지를 삭제한다.

○ 9면 7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9-19

【 (나)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주식회사 삼양사, 태평양씨앤씨 주식회사, 주식회사 체리쉬, 이엘센타 주식회사, 주식회사 티앤씨로지스의 임차부분은 원고가 물류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므로 위법하다. 】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빈

판사 박재우

판사 정승규